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| 개 | 정 | 안 |
|--|--|---|-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희생·공헌자"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가.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</p> <p>나.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</p> <p>다.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</p> <p>라.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</p> <p>등 공무수행</p> <p>2. "국가보훈대상자"라 함은 희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3. "국가보훈 관계법령"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.</p> <p>4. "보훈단체"라 함은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.</p> <p>제3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(이하 "단체"라 한다)로 한다.</p> 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희생·공헌자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가.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</p> <p>나.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</p> <p>다.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</p> <p>라.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</p> <p>등 공무수행</p> <p>2. "국가보훈대상자"란 희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3. "국가보훈 관계법령"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.</p> <p>4. "보훈단체"란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.</p> <p>제3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</p> | | |

제4조(책무) ① 구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민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,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공훈선양사업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

훈단체로 한다.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2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3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4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5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6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7.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단체

제4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"구민"이라 한다)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,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공훈선양사업) 구청장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극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국경일·기념일 등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
2.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의전상의 예우 실시
3.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
4. 보훈관련 기념일·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·격려
5. "호국·보훈의 달"에 지역 출신 희생·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
6. 국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

제6조(예산지원)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1.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회관 등 시설의 운영
2. 국가를 위한 희생·공헌자 추모 또는 기념사업
3. 호국·보훈정신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
4.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
5. 그 밖에 구청장이 단체의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1. 국경일·기념일 등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
2.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의전상의 예우 실시
3.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
4. 보훈관련 기념일·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·격려
5. 호국·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·공헌자의 공훈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
6. 국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

제6조(예산지원)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.

1.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회관 등 시설의 운영
2. 국가를 위한 희생·공헌자 추모 또는 기념사업
3. 호국·보훈정신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
4.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
5.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6.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
7.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
8. 보훈단체 운영
9.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단체의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
제6조의2(사망위로금 지급·신청)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(이하 “위로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.

③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.

④ 위로금 신청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자의 유족이 별지 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위로금 지급이 가능한 유족의 순위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사업

제7조(사망위로금 지급·신청)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(이하 “위로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.

③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.

④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⑤ 위로금 지급이 가능한 유족의 순위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를 준용한다.

제8조(보훈예우수당 지급·신청)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급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참전명예수당, 「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지원신청 및 보고) ① 제6조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, 예산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은 단체의 장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예산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중복지원 금지)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.

제9조(위문금 지급·신청) ① 구청장은 제3조제3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과 추석, 호국·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제8조에 따른 수당 수급자는 위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② 위문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지원신청 및 보고) ① 제6조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훈단체의 장은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, 예산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은 보훈단체의 장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예산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중복지원 금지) 다른 국가보훈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요인

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신설에 따른 예산 증가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2018년 9월 현재 국가보훈대상자 4,044명 중 서울시참전명예수당,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(서울시조례근거)함에 따라 약 2,500명이 수당지 대상으로 추정되며 고령으로 인한 연간 40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- 월 2만원 12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비용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2만원기준)

(금액:천원)

| 구분 | 1년차 | 2년차 | 3년차 | 4년차 | 5년차 | 합계 | 비고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
| 예상인원 | 2,500 | 2,460 | 2,420 | 2,380 | 2,340 | 12,100 | 구비 100% |
| 1인지급액 | 240 | 240 | 240 | 240 | 240 | 1,200 | |
| 금액(천원) | 600,000 | 590,400 | 580,800 | 571,200 | 561,600 | 2,904,000 | |

4. 작성자

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이름 |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이서백 |
| 연 락 처 | 02-3153-8808 |